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5. . . (제 회)	

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주택과장
제출 연월일	2015. . .

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칩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「주택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「주택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항을 개정함  
(안 제1조)
- 나. 사업의 보고, 조사, 검사, 정산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함(안 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  - 1) 「주택법」 제43조제9항
  - 3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 . . . ~ . . . ) 결과,
- 2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“원안 동의” 감사담당관(2015.11.12.)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“원안 동의” 여성가족과(2015.11.10.)

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3조제8항”을 “제43조제9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조치하고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”를 “조치한다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 관 계 법 령

## 주택법

제43조(관리주체 등) ①~⑧ 생략.

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24.>

⑩~⑪ 생략

##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강북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

연 락 처

02-901-6825